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항 만 안 전 특 별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369호, 2021.8.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항만 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교육의 방법 및 내용,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승인 절차, 항만안전점검관의 자격기준 및 직무범위,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규정(안 제2조)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직업안정법」상의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그 범위를 규정함.

나. 항만안전사고의 정의 규정(안 제3조)

항만안전사고의 개념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구체적으로 정의함.

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협의 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라. 안전교육의 방법 및 내용(안 제6조, 별표 1, 별표 2)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방법·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안 제7조)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작업별, 하역장비별 안전수칙 및 현장안전 점검 계획, 비상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승인 절차를 구체화함.

바.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임면·지정·위촉 등(안 제8조, 별표 3)

항만안전점검관의 자격기준을 책임급 항만안전점검관,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 실무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지정·위촉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사.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4, 별표 5)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별표 6)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4. 6. ~ 5. 16.)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4.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제3조(항만안전사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말한다.

제4조(항만안전협의체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4. 항만안전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연구기관
5.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② 관리청은 항만안전사고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참여기관 중 일부로 구성된 임시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항만안전협의체 운영) ① 항만안전협의체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항만안전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항만재해 통계 및 사고사례, 안전대책 우수사례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항만안전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의 방법, 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한다.

② 안전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과정, 교육계획, 법 제8조제2항의 교육비용에 대해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자 교육: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신규로 고용되거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운송 종사자(다만, 다른 항만운송 참여자를 통해 신규자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
2. 항만 전용 하역장비 신규자 교육: 항만 전용 하역장비(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에 처음 종사하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3. 재직자 교육: 재직 중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매년(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을 받은 연도는 제외한다) 실시하는 교육
4.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제2조제2호 및 제3호 대상자를 말한다) 교육: 일시적인 항만 출입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항만 필수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방법·유효기간 등은 별표 1과 같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안전교육 실시기관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일 이후 최초 하역작업 전까지 관리청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신청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해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 등을 조치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관리체계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책임과 권한 및 준수의무 등
3. 작업별, 하역장비별 안전수칙(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자별 역할분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하역장비·작업자 통행로 구분, 작업대기자 대기 가능 구역, 작업별 위험·경계구역 등을 표기한 항만사업장 도면
5. 현장안전 점검계획 및 점검일지 등
6. 항만안전사고 등 비상대응 절차 및 비상연락망 등
7.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열람을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갖춰 두는 장소
8. 그 밖에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등) ①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면, 지정 또는 위촉한다.

③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갱신 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명령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5. 그 밖에 관리청이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항만안전점검요원은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갱신을 포함한다)을 위한 현장 확인 지원
2.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 명령·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지원

⑤ 법 제9조의 업무수행을 하는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갱신을 포함한다), 변경 명령, 이행 여부 확인, 시정 조치 명령 등
3.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 지정 또는 위촉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5.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
6.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 작업 정지 명령 등
7.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자 교육에 관한 적용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영 제6조제3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재직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적용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관리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신청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 등을 조치해야 한다.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6조제4항 관련)

구 분	교육의 내용	교육 방법 및 시간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1. 신규자 교육	○ 항만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항만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하역작업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하역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시간 이상 (이론교육, 실습 훈련, 집합교육 및 비대면교육 등의 종류와 무관)	항만출입증 (상시) 발급 전까지 이수 (항만출입증 미발급 사업 장의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이수)

구 분	교육의 내용	교육 방법 및 시간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2. 항만 전용 하역 장비 신규자 교육	가.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컨테이너를 들어올려서 운반하는 장비	• 이론 7시간 이상 • 훈련 14시간 이상 (실제 장비 또는 시뮬레이터 활용교육 포함)	항만 전용 하역장비를 사용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수 (항만 전용 하역장비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1호의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한다)
	나. 원격조종 자동화 야드크레인(Yard crane): 컨테이너를 쌓거나 하역 또는 외부 운송을 위해 야드(컨테이너 적재장소)의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 장비에 실어주는 하역 장비 중에 사무실(통제실) 등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크레인	• 이론 7시간 이상 • 훈련 7시간 이상 (실제 장비 또는 시뮬레이터 활용교육 포함)	
	다. 원격조종 자동화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부두(안벽시설)에 설치되어 선박의 컨테이너를 부두의 육상 운송장비에 실어주거나 야드(컨테이너 적재장소)로부터 운송되어 온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주는 장비 중에 사무실(통제실) 등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크레인	• 이론 7시간 이상 • 훈련 7시간 이상 (실제 장비 또는 시뮬레이터 활용교육 포함)	

구 분	교육의 내용	교육 방법 및 시간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3. 재직자 교육	○ 항만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항만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하역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시간 이상 (이론교육, 실습 훈련, 집합교육 및 비대면교육 등의 종류와 무관)	유효기간 1년
4.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교육(영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대상자)	○ 항만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출입 항만의 특성과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항만 임시출입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	10분 이상	항만출입 전 까지 이수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 부담 방법(제6조 제4항 관련)

비용 부담의 주체	안전교육의 대상	비용 부담 방법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교육과정·교육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항만 안전 점검관	1. 책임급 항 만 안 전 점검관 (전문임기제 가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68세 미만의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항만안전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항만 안전 관련 분야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에서 항만안전분야 교수요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분야 전공의 교수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항만물류분야 또는 산업안전분야 정부기관·공공기관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임급 항 만 안 전 점검관 (전문임기제 나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8세 미만의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항만안전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항만 안전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에서 항만안전분야 교수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분야 전공의 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항만물류분야 또는 산업안전분야 정부기관·공공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항만안전점검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실무급 항 만 안 전 점검관 (전문임기제 다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8세 미만의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항만안전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항만 안전 관련 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에서 항만안전분야 교수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분야 전공의 교수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항만물류분야 또는 산업안전분야 정부기관·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항만안전점검요원		관리청 소속 항만물류분야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안전·재난·항만운영 관련 직원,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시행규칙에서 별도 규정하는 자
비고 1. “항만안전 관련 분야”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과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사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위에 있었거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한 분야를 말한다. 2. “항만안전분야 교수요원”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를 말한다. 3. “산업안전분야 전공의 교수”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수(부교수, 조교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를 말한다. 4. “항만물류분야”란 항만운송, 항만안전, 항만운영 등에 관한 업무분야를 말한다. 5. “산업안전분야”란 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조사 등에 관한 업무분야를 말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개별기준 같은 목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란 한다)의 기준에 따르되, 그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다른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해 처분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개별기준 같은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같은 위반행위"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다른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해 처분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해 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항만운송 참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1년 또는 등록취소
나. 항만운송 참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1년 또는 등록취소
다. 항만운송 참여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비 고				
1. 제2호가목의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다.				
2. 사업정지 일수에는 고용노동부(소속기관 포함) 작업중지 명령 일수를 포함하여, 행정처분 시 작업중지 명령 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부과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나. 별표 4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 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라.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계산한다.

마.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해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업무정지 일수} \times 0.0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해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4